



보도시점 2024. 8. 28.(수) 배포즉시 배포 2024. 8. 28.(수)

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지방세 외에도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으며, 이를 바탕으로 신규투자 지속 유치 중

<보도 주요내용>

8.28.(수) 한국경제는 「‘재탕 지원’뿐인 기회특구...“차라리 해외투자”」에서 ①기회발전특구 취득세·재산세 특례는 인구감소지역 이전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센티브에 차별성이 없으며, ②해당 지역에서 사업중인 기존 기업에 대한 감면혜택이 없어 역차별이며, ③기존에 발표된 기업들 외에 추가로 특구이전을 결정한 기업이 없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<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>

① 차별성 없는 인센티브라는 주장에 대해, 우선 인구감소지역 이전기업과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의 혜택이 동일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

* (인구감소지역 이전기업) 취득세 100%, 재산세 5년 100% + 3년 50%

(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) 취득세 100%, 재산세 5년 100% + 5년 50%(조례)

또한,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지방세 외에도 소득·법인세, 상속세, 보조금, 규제특례,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하면, 높은 수준의 기업유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.

- (소득·법인세)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·법인세를 5년간 면제하고, 이후 2년간 50% 감면해주는 데 이는 다른 특구에 대한 감면혜택과 비교시 감면율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. 또한, 수도권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소재 부동산 처분시 발생한 양도차익 중 기회발전특구 내 부동산 취득분에 대한 소득·법인세를 특구 내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.

- (상속세)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, 공제한도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.
- * 적용대상: (現) 중소기업/매출액 5천억 미만 중견기업 → (改) 중소기업/전체 중견기업
공제한도: (現) 최대 600억원 → (改) 한도 없음
- (보조금)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, 지방에서 신·증설 투자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(설비보조금 지원비율)을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5%p 가산합니다.
- (규제특례) 기업의 지방투자·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각 시·도가 직접 설계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·의결을 통해 특례를 부여하는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.
- (근로자 정주여건 개선) 기회발전특구 내 주택을 취득하고, 기존에 보유 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회발전특구 내 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(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)하며, 중소기업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(고용노동부) 대상 선정시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합니다. 또한, 향후 기회발전특구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민영주택 특별공급도 지원할 예정입니다.

② 기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, 기회발전특구는 신규 투자가 가능한 구역에 지정하는 것으로, 기존 기업들도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신규투자를 할 경우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며, 완료된 투자에 소급해서 세제 혜택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.

③ 추가로 특구이전을 결정한 기업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, 지난 6월 기업의 신규투자계획 26조원을 바탕으로 1차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했으며, 이후 2개월밖에 경과하지 않은 상황이지만, 신규 투자유치 사례*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기회발전특구에 기업투자가 지속 유치될 수 있도록 시·도와 긴밀히 협의하며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.

* (예) 대구시는 최근 대구국가산단 기회특구에 친환경차 부품업체 (주)하이박의 신규투자 유치(8.13)

담당 부서	지역경제정책관	책임자	과 장	박성진 (044-203-4420)
	지역경제진흥과	담당자	사무관	최선헌 (044-203-4405)

참고

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

구 분	주 요 내 용
① 소득·법인세	- 수도권 기업이 사업용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 시 양도차익 소득·법인세를 특구내 취득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- 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 소득·법인세 감면 (5년 100% + 2년 50% 감면)
② 취득·재산세	- 수도권에서 특구(비수도권)로 기업 이전 시 * 취득세 100%(조례 50%포함) 감면, 재산세 5년 100% + 5년 50%(조례) 감면 - 특구 내 창업 시 (비수도권) 취득세 100%(조례 50%포함), 재산세 5년 100%+5년 50%(조례) 감면 (수도권) 취득세 75%(조례 25%포함), 재산세 3년 100%+2년 50% 감면 - 공장 신·증설 시 (비수도권) 취득세 75%(조례 25%포함), 재산세 5년 75% 감면 (수도권) 취득세 75%(조례 25%포함), 재산세 5년 35% 감면
③ 상속세	- 특구 이전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- '업종변경 제한' 및 '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' 폐지 - 특구 창업·이전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('24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시 적용) (대상) 중소기업/매출액 5천억 미만 중견기업 → 중소기업/중견기업 전체 (한도) 최대 600억원 → 한도 없음
④ 이자·배당 소득세	민간자본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일정 기간(10년) 이상 투자 시 9% 분리과세
⑤ 양도소득세	특구 내 주택 취득시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
⑥ 지방투자 촉진보조금	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비율(5%p) 가산
⑦ 개발부담금	개발부담금 100% 면제
⑧ 규제특례	지방정부가 규제특례를 직접 설계하여 신청 → 지방시대위원회 심의·의결 후 해당규제 특례 부여
⑨ 주택 특별공급	특구 내 기업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
⑩ 공동 직장 어린이집	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대상 선정시 가산점 부여

※ ⑦개발부담금 감면, ⑧규제특례, ⑨주택 특별공급 등의 경우, 「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」 국회 통과시 적용